

 신안산대학교	교원연수 규정	규정번호 2-4-10 제정일자 2011. 5. 17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
---	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교원의 국내·외의 교육 및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연구 활동과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7.6.27.개정>

제2조(자격) 연수 대상자는 본 대학에 8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2017.6.27.개정>

제3조(연수기간) ① 연수는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장기연수와 1개월 이내의 단기연수로 구분 한다. 다만, 장기연수는 연수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.

② 장기연수는 학기 중에 단기연수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2017.6.27 개정>

제4조(연수인원) 연수인원은 본 대학의 학사운영 및 제반설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.

제5조(신청절차 및 선정) ①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연수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2017.6.27. 개정><2021.8.20. 개정><2023. 3. 30. 개정><2024.3.20. 개정>

1. 연수신청서 1부 [별지 1]

2. 연수계획서 [별지 2]

3. 연수승인서 [별지 3]

② 장기연수 연수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직연수, 대학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 다만, 단기 연수는 연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생략한다. <2017.6.27 개정>

제6조(연수기관)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학협동 및 학생 현장실습 유관 업체

2.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상의 산업체

3. 기타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<2017.6.27. 신설>

제7조(연수중지) 연수허가를 받은 교원이 연수기간 동안 연수목적이나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총장은 연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제8조(신분 및 처우) ① 연수교원은 연수기간 중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.

② 장기연수 교원의 연수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2017.6.27. 개정>

③ 단기연수 교원의 연수기간 중의 연수경비에 관하여는 교원 단기 연수비 지급에 관한지침에 따른다. <2017.6.27. 개정>

④ 교원의 연수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한다.

제9조(결과보고) 연수교원은 연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[별지 4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무) ① 연수교원은 연수 종료 후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.

② 연수교원은 연수기간 동안 타 대학에 출강하거나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장기교원은 복귀 후 연수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 대학에 복무해야 한다. <2017.6.27. 개정>

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기간 중 받은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

야 한다.

제11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단기연수 교원의 연수경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교원 연수 신청서

신청자	학 과					
	성 명	생년월일				
	최초임용일	년 월 일	재직연수	년 개월		
연수구분						
연수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개월)					
연수과제명						
연수기관	업 체 명	대표자성명				
	담당부서	담당 직위성명				
	전화번호	Fax번호				
	주 소					
	홈페이지	설립년도				
주요업종	직 원 수					
연수활용방안	기술습득	산학협동 (기술지도)	산학공동연구	교재개발	교육과정개발	기타
<p>위와 같이 연수를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교원연수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						
20 년 월 일						
신청인 : (인)						
						학과장
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						

[별지 2]

연 수 계 획 서

1.연수목적 및 필요성	
2.연수계획 및 방법	
3.기대효과 및 활용방안	
4.기 타	

[별지 3]

교원 연수 승인서

1. 연수교원 인적사항

- 학 과 :
- 직 위 :
- 성 명 :

2. 연수기간 : 20 . . . ~ 20 . . . (개월)

3. 연수과제명 :

위와 같이 본 기관에서는 연수를 승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연수기관명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대 표 자 : (직인)

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4]

연수 결과보고서

성명	학과	직위
연수구분	교육연수 () 연구연수 () 산업체연수 ()	
연수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개월)	
연수과제명		
연수기관	기관명	
	소재지	

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 : (인)

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

	1. 연수개요
	2. 연수내용
	3. 연수결과 및 성과
	4. 기타사항